

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
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 개정령안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408호, 2023. 05. 16. 공포, 2023. 11. 17. 시행)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6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, 제13호서식,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2항제7호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 같은항 제8호를 삭제한다.

기 관 명

수신 신청인, 행정안전부장관
(경유)

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

신청인 성명 (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		
신청 명세	접수일		접수번호	
	공공데이터 명칭			
	공공데이터 내용			
	공공데이터 활용 목적			
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				
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	성명		부서명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	성명		부서명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
발신 기 관 의 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유의사항

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기 관 명

수신 신청인

(경유)

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

이용자 성명 (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		
제공 명세	공공데이터 명칭			
	공공데이터 내용			
제공중단일				
제공중단 사유				
그 밖의 안내 사항				
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	성명		부서명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	성명		부서명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
발신기관의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

유의사항

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신청인	성명 (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			
	주소(소재지)			사업자(법인·단체) 등록번호			
	전화번호			전자우편주소			
해당 공공기관	기관명			주소(소재지)			
	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			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			
	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			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			
해당 공공데이터	명칭						
	내용						
분쟁 유형 및 처분일	분쟁 유형	[] 제공거부		[] 제공중단			
	처분일			년	월	일	
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	*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.						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

자 르 는 선

접 수 증

접수번호		신청인 성명	
접수부서		접수자 성명	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년 월 일

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

직인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468